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4
------------	------

발의연월일 : 2016. 7. 21.

발 의 자 : 황주홍 · 김동철 · 이개호

이춘석 · 백재현 · 박지원

김현권 · 이찬열 · 조경태

노웅래 · 김관영 의원

(12인)

### 제안이유

현행 한국마사회법상 마권환급금 소멸시효는 90일로 매우 단기간이기 때문에 고객이 찾아가지 못하는 금액만 해도 연간 80억원에 가까우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고액의 미환급금에 대해 마사회가 부가적 수입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고, 시효기간이 단기적이라 고객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하여 고객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마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환급금의 소멸시효기간을 1년간으로 함(안 제8조).

법률 제 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90일간”을 “1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환급금) ① · ② (생 약)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 금의 채권은 <u>90일간</u>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한다.	제8조(환급금)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 ----- <u>1년간</u> ----- ----- --.